

원주의과대학 의예과 학사에 관한 내규

제 정 2010. 3. 1.

개 정 2025. 4. 1.

제 1 장 의학과 진급에 관한 사항

제1조 (진급조건)

의예과 수료를 위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, 다음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의학과로 진급할 수 있다.

- ① 의학과 진급시 수료학점은 최소 76학점 이상으로 대학요람에 따른 수강 학년도에 개설된 의예과 모든 과정(채플 2학점 포함)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- ② 전향에도 불구하고, 채플(2학점)은 졸업시까지 이수하되, 이중 1학점(2학기) 이상은 의예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 단, 채플 이수 학점에 따라 의학과 진급을 위한 수료 학점이 변동될 수 있다.
- ③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32조의 교양 및 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(2020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)
- ④ 외국어 인증 자격요건을 취득해야하며, 세부사항은 원주의과대학 외국어 인증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- ⑤ 외국어 인증 신청서는 의학과 1학년 1학기 정규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학생부로 제출하여야만 한다.(단, 의학과 일반 편입생은 제외)
- ⑥ 의학과로의 학과 진급여부는 상임교수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학장의 추인을 받는다.

제2조 (재학연한)

의예과의 수학기간은 6학기(3년)를 초과할 수 없다. 이 기간내에 의학과 진급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제적이 된다. 다만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, 휴학에 관한 사항은 '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'에 따른다.

제 2 장 수강신청, 휴학 및 제적에 관한 사항

제3조 (수강신청) 각 학기마다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없다.

제4조 (능력취득학점)

의예과 학생은 연세대학교 내규 중 능력별 학점취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
제5조 (휴학 및 제적)

휴학 및 제적에 관한 규정은 “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”에 따른다.

제6조 (계절제수업 학점인정) 계절학기 이수 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.
2.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'에 따른다.
3. 이 개정 내규「제1조 1항」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4. 이 개정 내규「제6조 신설」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내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.
5. 이 개정 내규「제1조 개정」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내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.
6. 이 개정 내규「제1장 장제목, 제1조 본문 및 조제목 개정, 제2조 개정」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